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조선왕릉관리소 | 2014 | 주 의 | - | - | |

【제 목】 국가지정문화재 조선왕릉 주변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1. 지적 내용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지매입의 경우, 감사원 감사 지적(2012.5.7) 이전에는 토지매입 범위를 문화재보호구역 내로 한정하는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문화재보호구역 외부 토지매입 예산이 지원되어 매입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 문화재보수정비 분야 감사원 감사시 문화재보호구역 외부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은 적정하지 않다면서 개선을 요구한 이후에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문화재 구역 이외 토지매입은 불가능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 신청 지침을 시달(2013.4.26./기획재정담당관-949호)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매입은 가능하지 않도록 차단한 바 있음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내용】

- ◎ 문화재보호구역 외부 토지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먼저 지정한 후에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보호구역 외부 토지 매입 관련 업무 철저 통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사적 등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왕릉 등 문화재 주변 지역의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이 없어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매입 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조선왕릉관리소는 사적 등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왕릉 능제 복원 등을 목적으로 2012-2014년 기간 중 12건의 토지를 매입 정비하고 있으며, 매입 토지 중 9건은 문화재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이하 문화재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적 제358호 '과주 소령원'주변 토지매입(2012.12.27. 매입) 등 3건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를 조선 왕릉의 능제 복원을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2014.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2.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왕릉 능제 복원 등의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향후 토지매입 시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조선왕릉관리소 | 2014 | - | 감액 | 3,037,490 | |
| | | | 환수 | 1,215,000 | |

【제 목】 문화재 수리 공사 설계 변경 지연 등에 관한 사항

1. 근거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가. 서울 정릉 재실 복원 2차 공사

조선왕릉관리소는 2014. 3. 10 ~ 2014. 12. 21.까지 “서울 재실 복원 2차 공사” ((주)○○ / 1,031,405천원)를 시행 중에 있음

상기 공사 시행 중 2014. 5. 14 자문회의에서 ‘행각 외부와 석축사이는 강회다짐은 유지관리와 외관의 미관상 문제의 여지가 있으므로 화계처럼 만들고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마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 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2014. 9. 3. 시행된 설계변경에는 상기 내용이 누락되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로 공사는 당초 설계의 생회석다짐(5.60㎡)이 아닌 마사토포장(56.07㎡)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 공사비를 재산정한 결과, 514,000원 감액 필요)

나. 고양 서오릉 창릉 수복방 및 수라청 복원 공사

조선왕릉관리소는 2014. 6. 3 ~ 2014. 12. 7.까지 “고양 서오릉 창릉 수복방 및 수라청 복원”공사((주)○○○○○○ / 211,304천원)를 시행 중에 있음

| 공 정 | 당초(설계) | 변경(시공) | 증감 | 비고 |
|----------|--------|--------|---------|-----------|
| 공사안내판 | 4개 | 2개 | 감 2개 | 공통가설 |
| 콘테이너가설창고 | 1동 | 0동 | 감 1개 | 공통가설 |
| 조립식가설울타리 | 116.1m | 96.5m | 감 19.6m | 수복방 및 수라청 |
| 이미지안내판 | 5개 | 0개 | 감 5개 | |

상기 공사 시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 물량이 설계보다 축소 또는 미설치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감액하여야 하나, 공사안내판(4개→2개), 콘테이너가설창고(1동→0동), 조립식가설울타리(116.1m→96.5m), 이미지안내판(5→0개) 등이 당초 물량이 축소되었음에도 2014.11월 감사기간까지 감액 등 설계변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공사비를 재산정한 결과, 2,523,490원 감액 필요)

다. 연산군묘 경계지역 경관 정비

조선왕릉관리소는 2014. 6. 24 ~ 2014. 9. 28.까지 “연산군묘 경계지역 경관 정비”((주)◇◇ / 130,939천원)을 시행하였음

상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석축공사 시 설계에는 인력(100%)으로 터파기(109.75㎡)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실제 공사는 기계장비인 굴삭기(70%)와 인력(30%)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감액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공사비 1,215,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서울 정릉 재실 복원 2차 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조속히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감액(3,037,490원) 조치하시고, “연산군묘 경계지역 경관 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과다지급한 공사비(1,215,000원)를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조선왕릉관리소 | 2014 | - | | | 주의(2명) |

【제 목】 선릉 신로 복원 정비 공사에 관한 사항

1. 근거 규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재 수리 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 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조선왕릉관리소는 2013. 11. 18 ~ 2014. 7. 21.까지 2차에 걸쳐 선릉 신로 복원 정비 공사(◆◆◆◆(주) / 359,622천원)를 추진하였음.

동 공사 중 신로 경계석 설치 공사(406.08m / 재사용 192m)의 경우 2013. 11. 27. 1차 자문회의에서 “신로 내부에 사용되는 경계석과 박석은 규격과 가공 그리고 크기 및 형태가 다양하므로 원형이 잘 남은 신로(예: 강릉 등)를 모델로 하여, 시범적으로 시축한 다음 시공함이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선왕릉관리소는 2013. 12. 20. 동구릉(수릉, 현릉, 원릉, 송릉), 태강릉, 선정릉 등 기존 조선왕릉의 신로에 대하여 석재 종류, 가공, 규격, 형태 및 배치방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왕릉 전체가 경계석의 가공이 오랜 시간으로 풍화 및 마모가 심하나 표면은 거친 정다듬으로 가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선릉 신로 복원에 사용되는 경계석은 기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거친 정다듬으로 가공하여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나,

2014. 2. 17. 개최된 2차 자문회의에서 경계석 측면 가공은 곱게 하고, 상부는 한 단계 낮은 가공 형식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설계에서 기 신로 조사 결과와 같이 경계석이 거친 정다듬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4. 4. 28. 설계변경 시에 경계석의 측면은 도두락 다듬, 상부는 고운정 다듬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함으로서 당초 기존 왕릉의 신로 경계석 가공과는 다른 방식의 가공 마감으로 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장은 기 시공한 선릉 신로 경계석 가공 마감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고,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조선왕릉관리소 | 2014 | - | 환 수 | 393,000 | - |

【제 목】 문화재 수리공사 환경보전비 적용에 관한 사항

1. 근거 규정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 시 문화재 수리공사는 환경보전비를 제외토록 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조선왕릉관리소는 2014. 5. 16 ~ 2014. 9. 25까지 “고양 서오릉(명릉앞) 관람로 정비공사”(□□□□(주) / 146,427천원)를 시행하였음

문화재 수리공사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 시에는 환경보전비는 제외하여야 하나, 공사 완료 시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환경보전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시공업체(□□□□(주))에 지급함에 따라 393,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장은 과다 지급한 공사비 393,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NO. 5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조선왕릉관리소 | 2014 | 모 범 | - | - | - |

【제 목】 조선왕릉 산성화된 토양 개량사업

1. 사업내용

- 각종 환경오염으로 산성화된 도시주변 왕릉의 토양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토양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임목생육을 촉진시켜 건전한 산림으로 유도
 - 조선왕릉관리소, △△△△재단, ☆☆☆☆☆☆☆원 참여
 - * △△△△재단에서 사업비 등 전액 부담
 - 기간 : 2014. 4. 1. ~ 4. 25.
 - 면적 : 50ha(동구릉 38ha, 태강릉 12ha)
 - 살 포 량 : 132,000kg

| | | |
|---------------------------------|--------------------|--------------------|
| ※ 추진 사항 | | |
| - 2005년 : 창덕궁, 종묘, 동구릉, 총 47ha, | - 2006년 : 선정릉, 현인릉 | 총 52ha |
| - 2013년 : 서오릉 | 총 50ha, | - 2014년 : 동구릉, 태강릉 |
| | | 총 50ha |

2. 효 과

-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보존을 위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조선왕릉 역사경관림의 생태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
 - 동구릉(PH 4.7), 태릉(PH 4.8) 산림토양 PH 5.5 이상으로 개선
 - 2014년 예산 절감 : 80백만원
 - ※ 2005년~2014년 예산절감 총액 : 306백만원

3. 조치할 사항

- '14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